

2026년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6년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7월 6일

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예정인원(1개 분야, 총 1명)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	근무예정부서
속기(대체인력)	지방한시임기제9호 (주35시간 근무)	1명	임용일로부터 '27.1.10.까지 (예정)	의사담당관

※ 육아휴직자의 휴직 연장 등의 사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.

2 임용예정직무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담당 업무
속기 (대체인력)	지방한시 임기제 9호 (주35시간근무)	○ 속기, 번문 및 교정 ○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○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등록 및 관리

3 근거 법령 등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

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, 27조의7

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)

라. 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등

4 보수 수준

*기준일 : 면접시험일

가. 연봉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「공무원보수 규정」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구 분	봉급기준액	週당 35시간 환산 봉급기준액
속기(대체인력) 지방한시임기제 9호	월2,346,300원	월2,053,013원

※「고용보험법」제10조 제1항 제3호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5 응시 자격

*기준일 : 면접시험일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나. 응시 자격요건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임용(응시)자격
자치현안 지원분야	지방행정 6급 (일반임기제)	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 지방의회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, 기업체 등에서 속기 실무 업무 수행 경력 ※ 우대요건 : 한글속기 1~3급(국가기술자격) 자격증 소지자

※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업무 내용 등은 붙임의 “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” 참조

※ 응시자격요건 주의사항

○ 기본사항

- 임용(응시)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
- 임용(응시)자격요건에 해당하는 **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**는 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
- 임용분야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,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

○ 경력의 범위

-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- '경력' 요건의 경우,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
 - ※ [예1] 관련분야 '공무원(임용예정계급상당) 경력 2년'과 '민간경력 1년'을 합산하여 '관련분야 경력 3년'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※ [예2] '관련분야에서 상당 계급 이하의 공무원 경력'은 민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- '경력'은 임용 분야별 자격에 명시된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경력만을 의미하며,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-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
-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,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필요 시 경력사실 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
 - ※ **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누락된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**
- 임용(응시)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
-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(근무기간이 긴 경력)함
- 경력기간은 통상근로(전임근무)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의 경우 기준(주당 40시간 근무)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

※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 경력 산정 방법

- 전임 근무 : 경력의 전부 인정
- 시간제 근무 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
(예시) 1년간 주 30시간 시간제 근무 : 9월 인정
-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: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
- 전임교수가 아닌 강의경력 또한 시수에의한 계산으로 경력 산정

-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 가능하며, '폐업사실증명서'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- 임용(응시)자격 관련분야와 무관한 경력 제출 불필요

○ 학사학위

- 공통 임용(응시)자격의 '학사학위'는 전공과 무관한 '학위' 자체를 의미함

○ 우대요건
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6 시험 일정

구분	시험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일정	'26.7.6(월) ~ '26.7.17(금)	'26.7.20(월) ~ '26.7.22(수)	'26.7.29(수)	'26.8월(예정)	'26.8월(예정)

-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상황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,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
-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게재 예정

7 시험 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.

※ 서류전형 기준

1. 자기소개서 / 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대 상 자 :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내용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/ 직무관련(논술자료 등) 면접
- (면접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- (합격자 결정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 - 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7. 20.(월) ~ 2026. 7. 22.(수), 18:00까지 /3일간
- 접수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접수방법 : **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**
 - ☞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인사팀으로 연락바람
 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▶ 주소 : (우54968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▶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4782)
- ▶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×)

나. 제출서류

붙임3 참고

순번	서류	내 용
1	응시원서	별지서식 제2호
2	이력서	별지서식 제3호
3	자기소개서	별지서식 제4호
4	직무수행계획서	별지서식 제5호
5	최종학교 졸업증명서	대학교 졸업증명서, 석박사학위 증명서, 사본
6	경력 및 재직증명서	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경력사실 확인서
7	경력증빙서류	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中 1,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)
8	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	별지서식 제6호
9	주민등록초본	1부 (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)
10	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	해당자에 한함
11	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	해당자에 한함
1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별지서식 제7호

9 안내 및 참고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모든 증명서는 원본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제출이 원칙입니다.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,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)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(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 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
- 사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 및 업무 관련 문의 :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
(☎ 063-280-4782)

붙임1

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속기(대체인력)	지방한시임기제9호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의사담당관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속기, 번문 및 교정 ○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○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등록 및 관리
-------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전문성(속기), 분석력, 사고력, 표현력(글쓰기), 의사 진행능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제도, 행정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○ 의회 의정활동 관련 속기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
-------------	---

임용(응시) 자격요건	관련분야
	<p>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※ 관련분야 실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연구소·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, 기업체 등에서 속기 실무 업무 수행 경력
우대요건	<p>※ 우대요건 : 한글속기 1~3급(국가기술자격) 자격증 소지자</p>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붙임 3

제출 서류 안내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
구 분	내 용
1.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지서식 제2호 작성, 자필서명 필수 - 응시수수료 :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(6·7급) *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※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(09:00~17:00/카드결제만 가능) ※ 아래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빙자료 제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
2.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지서식 제3호 작성, 자필서명 필수 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관련 경력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
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분야외의 업무관련성 중심으로 A4 3매 이내로 작성(별지 서식 제3호), 자필서명 필수 -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,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5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지서식 제5호 활용, 5매 이내 작성, 자필서명 필수
5.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(학위증)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교 졸업증명서, 석·박사학위 증명서 사본(수수료 불인정) - 석사학위 이상 학력보유자도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필요
6. 경력 또는 (재직) 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○ 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○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○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※ 최종합격 후 경력조건 미달 확인 시 임용 취소될 수 있음 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(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)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7.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해당기관 홈페이지 발급가능) 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 ○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 발급) - 인정 받고자 하는 경력의 전체 연도 증명서 필요
8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6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필서명 필수
9. 주민등록초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- 병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병적증명서(병무청)발급 제출
10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자에 한함.
11.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연구경력을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에 제출
1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(별지서식 제7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-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